

정관

(2019.11.23)



EST. 2018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제 1 장 총칙

1 조. 목적

미주 동포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통합사회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장애인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경기인을 양성하여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2 조. 명칭및주소

- 1항) 명칭은 재 미국 대한장애인 체육회로하며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표기한다.
- 2항) 영문은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본부는 미국 수도에두는것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에따라 본부사무소를 회장거주지 혹은 제 3 의도시에 둘수도있다.

3 조. 사업

본회는 제 1 조 목적달성을 위해 미주내에서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항)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개최,지원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전개
- 2항)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
- 3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등을 한다.
- 4항)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5항)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자료수집,각종 발행물 발행
- 6항)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사업을 추진한다.

제 2 장 구성

4 조. 본회는 본부와 이사회, 광역체육회, 지역체육회, 중앙경기단체로 구성된다.

5 조. 광역체육회

- 1항) 미주전역을 9 개지역으로 분할하여 그광역을 대표하는 광역체육회를 둔다.
- 2항) 광역체육회장은 자동이사와 자동대의원이 된다.
- 3항) 광역체육회의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후 대의원총회에 상정되어 의결된다.
단, 광역체육회가 자진탈퇴할경우 출석대의원의 1/2 이상, 본회가 퇴출시키고자
할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2/3 이상 찬성을해야 의결된다.
- 4항) 광역체육회는 산하에 경기단체를 두지 않는다.
- 5항) 광역체육회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6항) 광역체육회는 소관지역의 주별 또는 카운티별로 지역체육회를 둈다.

6 조. 지역체육회 (지회)

- 1항) 광역체육회의 산하단체로 주(STATE), 카운티(COUNTY) 별로 둘수가있다.
- 2항) 지역체육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로 확정하며, 지역체육회 현직대표자는 당연직대의원이된다.
- 3항) 지역체육회에서는 종목별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두며, 승인된가맹단체는
중앙경기단체 승인을 원칙으로한다.
- 4항) 지역체육회규정을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7 조. 중앙경기단체

- 1항) 본회의 가맹승인된 각 종목별 중앙경기단체는 전국적조직체를 갖춘 한인
경기단체를 말한다.
- 2항) 본회의 가맹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3항)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체육회에 가입된 지역경기단체를 산하단체로 두어야하며, 중앙경기단체의 가맹, 승인,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
- 4항) 중앙경기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지역 경기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5항) 중앙경기단체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8조. 가맹단체 대표자 인준 승인된 단체의 회기, 총회 및 대표자(회장) 인준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회기는 만 1년이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앙경기단체의 회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나) 지역체육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다) 단체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일전 이내에서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단체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나)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는 본 규정 3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한다.

1. 단체장 보고서

2.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3.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4.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및 당 총회의 회의록

3항, 본회에서 승인된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에서 선출되어 확정된 단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

가) 회장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

해당 단체의 회장 인준을 받는다.

1. 단체장 변동보고서

2. 단체본부 임원보고서

3.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

4.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

5.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

나)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회 총회감독관 보고서(선거를 참관하였을 시)에 의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항, 본 규정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나 본 규정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항, 본회는 승인된 단체의 총회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감독관은 본회 이사 및 대의원 중에서 본회 회장 직권으로 임명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6항, 본회의 승인된 단체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보고를 하지 않을 때 본회의 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상실한다.

본 규정 적용은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유효하다.

- 1항)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2항) 각단체는 회장선출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결과내용을 30 일이내에 총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3항) 본회의 승인된단체가 규정에의하여 총회를 하지않는다면 본회규정에 의해 징계대상이된다.
- 4항) 각종 총회보고서 양식은 본회사무처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수있다.

9 조. 탈퇴

본회에서 승인된 가맹단체는 임의로 탈퇴 할수있으며 다음 각1항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로 탈퇴시킬수있다.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므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단, 총회에 보고 시 명확한 물증을(서면보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명확하게 검증할수있는 물증을 제시해야한다.

- 1항) 가맹단체의 자체적인 결정에의해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을때
- 2항) 본회에서 주최하는행사(총회,미주체전)에 승인된단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2 년이상 참관 또는 참가하지않았을경우
- 3항) 본회 규정에의해 대의원의 권한을 갖은 단체가 연속 2 회 이상 소집된 총회(임시총회 포함)에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을때
- 4항) 본회에서 인정하지않는 유사한단체에 가입하였을경우
- 5항) 승인된 가맹단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경우 즉각 자격이 정지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였을경우 자동퇴출로 인정한다. 여기서 의무사항이란 회비납부와 총회보고로 규정된다.

제 3 장 조직

본회는 본부 및 이사회로 구분된다.

10 조. 본부

본부는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조직된다.

1항) 임원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4인
4. 사무총장 1인
5. 사무처장
6. 재무 1인
7. 사무차장 1인
8. 각분과위원장

2항) 감사

1. 감사 1인

3항) 분과위원회

1. 총괄기획위원회
2. 정관개정 분과위원회
3. 소청, 상벌위원회
4. 재정 분과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생활체육위원회
7. 체전분과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9. 경기기술분과위원회
10. 경기운영 분과위원회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4항) 기타 본회가 필요로하는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둘 수 있다
- 5항) 위촉위원
 - 1. 명예회장 1 인
 - 2. 고 문 필요인
 - 3. 자문위원 필요인
- 6항)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7항) 본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회양식 (사무처에 배치)에 의거 신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조. 이사회 구성

본회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구성되며 추대이사는 회장 추천으로 선임한다.

- 1항) 당연직이사
 - 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차장, 재무, 분과위원장이 당연직이사가 된다.
 - 나. 광역체육회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 다. 당연직이사는 자동으로 대의원자격을 가진다.
- 2항) 추대이사
 - 가. 회장이 본부 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그 수는 필요인으로 한다.
 - 나. 추대이사 중 1 인은 재외 한인체육단체 임원을 추천 받아 선임한다.
 - 다.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며 본회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
- 3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순으로 한다.
- 4항) 이사회는 총무를 두어 그 업무를 관리한다.
- 5항) 본회의 사무처장 혹은 사무차장이 총무를 대신할 수 있다.

12 조. 임기

- 1항) 회장
 - 가. 회장의 임기는 정기 2 년의 임기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나. 회장의 임기는 홀수연도 3 월 1 일부터 후년 2 월 말까지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다. 본회회장은 본회 및 본회의 산하단체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체전조직위원장은 별도로 한다.

라. 회장을 제외한 본부임원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2항) 감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3항) 명예회장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4항) 고문 및 자문위원

가. 고문 및 자문위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임이며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5항) 이사

가.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나. 추대이사는 2년을 임기로 하며 회장 임기일로 임기를 마감한다.

6항) 임원들은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직무를 수행한다.

13 조. 상임이사회 설치운영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항) 상임이사를 이사회의 동의하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항)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항) 상임이사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4 조. 본부조직 선출 및 임명

1항) 임원 및 분과위원장

가. 회장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받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후보자가 1인 일 때는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회의(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라. 감사는 대의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마.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여성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바. 회장선출은 선거총회 세칙에 따른다.

2항) 위촉위원

가. **명예회장**: 직전회장이 자동으로 위촉된다.

나. **고문**: 본회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다. **자문위원**: 회장지명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라. 단, **명예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15 조. 임원 피임자격

1항) 회장은 미국에서 취임날짜를 기준으로 3년(1095일) 이상 거주한 한인 이어야 한다.

2항) 한국 및 미합중국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직을 포함한 본회의 어떠한 임원에 또는 대의원에 선출, 임명 될 수 없다.

가. 어느 단체에서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 2년 전 인자

나. 법 범행 위로 인하여 미화 5천불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어느 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다. 반 국가적 단체에 관련이 있는 자

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동포 사회의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

마. 본회의 명예훼손은 물론 위계질서 문란 및 결정된 사항과 지시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바. 본회 및 본회 산하 단체 그리고 동포 사회 단체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

3항) 회장 피임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대의원을 임기 2회(4년) 이상을 완수한 자

나. 덕망이 있고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다. 대의원 임기를 마친 자가 어떠한 이유로 체육회를 떠난지 2년 이지났을 경우 지난 회장 피임자격은 말소된다.

16 조. 보선 및 직무대행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1항) 회장 보선당사자와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하고
연임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 가. 회장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남았을때에는
30일이내에 임시총회에서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나. 회장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일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한다.
- 다. 회장 직무대행이 없을때에 임시총회결정에따른다.
- 라. 보궐선거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때에는 임시총회결정에따른다.
- 2항) 감사
결원이 발생하였을때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 3항) 임명서면결의
가. 회장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임원선출(감사포함)은 서면결의(온라인승인)
임시총회를통해 선출및임명동의과정을 대신할수있다.

17 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

- 1항) 회장
- 가. 재 미국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한다.
- 나. 본회의 행정과회계를 책임진다.
- 다. 감사를 제외한 모든 본부조직원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 라. 각종회의 소집권한과 의무를가진다.
- 마. 각종회의 결의사항을 최종확인 공포한다.
- 바. 예상편성및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 사. 재정,업무및 사업실적을 총회에보고한다.
- 아. 회장은 본회 이사장 이외에 그 어느직책도 겸임할수없다.
- 2항) 수석부회장
- 가. 본회의 본부대의원 자격이주어진다.
- 나. 회장을 보좌한다.
- 다.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라. 본회의 행정업무상 특성에의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수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3항)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대행한다.
- 나.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5 명의부회장을 두도록한다
- 다. 본회의 행정업무상 특성에의해 그 직무를 나누어 수행할수있다.

4항) 사무총장

- 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 나. 본회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다. 본회 임원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 라.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5항) 사무처장

- 가. 본회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나. 재무 유고시 재무업무도 겸한다.
- 다. 본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라. 본회임원 및 전국가맹단체 연락망을구성,운영한다.
- 마. 회장 및 감사가 업무보고서를요구시 즉시보고 하여야한다.

6항) 사무차장

- 가.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나. 사무처장유고시 그업무를 대행한다.
- 다. 재무유고시 재무의업무를 대행할수있다.
- 라.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작성 및 기록을 보관한다.

7항) 총괄기획위원회

- 가. 본회의 연중사업을 기획한다.
- 나. 본회의 예정을작성, 실적대비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
- 다. 본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조정한다.

8항) 소청,상벌 분과위원회

- 가. 본회 상벌세칙에따라 집행할권리를가진다.
- 나. 본회규정에따라 포상 및 징계대상자를 선별,심의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9항) 출판 및 홍보위원회

- 가. 본회의 각종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한다.
- 나.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지를 출간한다.
- 다. 본회가 시행하는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10항) 체전분과위원회

- 가. 본국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준비에 모든업무를관장한다.
- 나. 미주 한인장애인체육대회개최준비를 조직위원회와공조한다.
- 다. 본국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준비를 관장한다.

11항) 대외협력위원회

본국과 주류사회 및 미정부기관을 유관기관에대한 업무협조를 본회를 대표해서한다.

12항) 경기 기술분과위원회

- 가. 본회가 주최,주관하는대회에서 경기및기술운영을 관장한다.
- 나. 각종대회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보고한다.

13항) 경기 운영분과위원회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위하여 경기스케줄 조정 및 참가 신청서를 관장한다.

14항) 감사

- 가. 감사는 본회 재정회계를 감사한다.
- 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권한을가질수있다.
- 다.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공문서를 열람할수있다.
- 라. 감사는 감사중에 이상을 발견했을때에는 총회를 소집할권한을 가진다.
- 마.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서보고한다.

18 조. 임원의사임 및 해임

1항) 다음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직위를 즉시 사임할것으로한다.

- 가. 당연직이사 및 당연직대의원은 그해당직위를 상실한경우
- 나.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 회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경우

2항) 회장은 당연직이사직을 보유하고있는 본부임원외에는 회장직권으로 해임할수없다.

19 조. 대의원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본부대의원, 위임대의원으로 구분된다.

1항) 당연직대의원

- 가) 본회의 광역체육회, 지역체육회, 그리고 중앙경기단체는 각각 1인의 당연직대의원을 본회에둔다.
- 나) 당연직대의원이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항) 본부 대의원

- 가) 본회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본부임원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재무 등 분과위원회장은 본부대의원이 된다.
- 나) 본부 대의원의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항) 위임 대의원

- 가)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은 본회 양식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 나) 위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단체의 현직부회장, 전직회장, 현직 전무이사 또는 현직 사무국장이다.
- 다) 본부 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당연직대의원으로만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한 직책은 위임할 수가 없다.
- 라) 위임 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본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20 조. 이사회

본회에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운영 할 수 있다.

1항) 정기이사회

- 가. 매년 3월 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 나. 정기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 다. 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2항) 임시이사회

회장은 필요에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할수있다.

21 조. 상임이사회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위해 상임이사를 다음과같이 임명한다.

- 1항)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하에 5 인이상으로 구성한다.
- 2항) 긴급때 소집할수있는 이사를 임명한다.
- 3항) 상임위원회는 필요에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4항) 회장은 상임이사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때에는 2 주이내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야한다.
- 5항)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이사회에 참석을 못할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상임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임할수있다.
- 6항) 상임이사회의 의결사안을 차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재심을 요구할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22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재 미국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가 보선일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동의한다.
- 다. 가맹단체 인준자격을 심의한다
- 라. 정관 및 규정 개정에대한 의결을 사전에 심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 마. 사업계획,예산의 사전검토를 대의원총회에 상정힌다.
- 바. 재 미국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상기에 나열된 안건을포함 제반안건을 의결한다.
- 사. 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한다.

23 조. 이사회의 성원 및 소집

1항) 정기이사회총회는 매년 3 월중에거행되며 대의원총회 직전에 거행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2항)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최일 2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한다.
- 3항) 이사 1/3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요구할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 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5항) 이사회의 의결을 본회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항) 당연직이사의 제명을 결정할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이상, 참석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 7항) 이사회는 필요에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4 조. 서면결의 이사회

본회가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경우에는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수있다.

- 1항) 안건결의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항) 서면결의는 이사회소집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함
 - 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나. 의제 및 긴급개최의 사유설명
 - 다.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
- 3항)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하며 이사회결과의 공개를 요할시에는 항상 공개해야한다.
- 4항) 서면결의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대의원징계에대한 건은 의결할수없으며, 소속원의 인간성의 존엄성에대해 피해가 우려되는사항은 결의할수없다.

제 5 장 대의원총회

25 조. 대의원총회의결의

- 1항)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2항) 본회의 기타기관에서 의결하지못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26 조. 대의원총회 구성원

- 1항) 본회정관이 규정하는 본부(당연직)이사, 광역단체장, 지역체육회장, 중앙경기단체장으로 구성된다.
- 2항)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된다.

27 조. 의결사안

- 1항) 정관개정 및 수정
- 2항) 본회 회장, 감사선출 및 직위해제
- 3항) 임원, 이사의 해임 및 복권
- 4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
- 5항)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승인
- 6항) 본회의 해산 및 통합
- 7항)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기타기관에서 의결하지못한 안건
- 8항) 대의원의 징계의건
- 9항) 기타 필요한 안건

28 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서면결의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1항)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3 월말까지 개최하여야하며 장소는 다음과같다
 - 가) 미주체전이있는 년도 (짝수년도)는 체전개최지에서 한다.
 - 나) 정관이 정하는 총회 개최시일은 변경할수있다.
 - 다)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정기 대의원총회 장소변경을 결의하였을때에는 회장은 그 결의사항을 따라야하며, 변경된장소를 총회개최일 30 일전에 대의원 및 임원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2항) 임시 대의원총회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소집한다.
 - 나) 소집일자는 다음과같이 접수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1) 재적대의원 1/3 이상의동의하에 서면으로 회의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때

다) 장소는 본회의특성을 고려하고 지회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것을 권장한다.

라) 총회는 연 1 회에 한하여 과반이상 대의원의 동의를얻어 비대면(ZOOM 또는 화상) 총회로 할수있다.

3항)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임시대의원 총회의 소집이 여의치못할 경우에는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수있다.

가) 본회회칙에 출석대의원 2/3 이상또는 재적대의원 2/3 이상 의결규정 또는 회칙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소집을 할수없다.

나)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다)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라) 서면결의 대의원총회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해야한다.

- 1) 긴급을 요하는 사유
- 2) 의제및 의제에 관한설명
- 3)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한다.

마)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결과를 모든대의원과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한다.

4항) 총회개최 일시는 본 정관에명시한 시일이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29 조. 의제 (안건)

1항) 회장은 총회의제를 직권으로 정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은경우 의제가된다.

가) 대의원 3 인이상이 문서로 본부에 건의된 안건

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총회상정 안건

다) 총회도중에 긴급안건을 부의할수있다. 단, 긴급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의제가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라) 개인 또는 1개단체가 안건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총회의제가 될 수 있다.
- 2항) 미주장애인체전이 있는 년도(짝수년도) 총회에서는 차기 혹은 차차기 미주체전개최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0 조. 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

- 1항) 총회는 재적대의원수의 과반수 이상(위임장포함)으로 성원되며 의제 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회칙이 특별히 규정한 의결찬성수는 변경할 수 없다.
- 나) 본회 회칙규정과 상반되는 의결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다) 대의원의 해임 및 제명의 결정을 할 경우 재적대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항) 의장은 총회에서 표결권이 없으나, 의제의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을 시에는 의장이 결정권이 있다.
- 3항) 의결 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4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그 시행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 조. 총회의결 제한

-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항) 본회의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
- 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
- 나)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급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3항) 상기 2 항가), 나) 에관련자는 표결시 대의원출석수에서 제외된다.
- 4항) 심의과정이 없었던 징계결정은 (자격정지, 직무정지까지할수있으며, 심의를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로 회부(하달) 하여야한다.

32 조. 총회 소집공고 및 통보

- 1항)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 및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 토의의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장 명으로한다.
- 2항) 선거가있는 연도의 총회소집공고 및 통보는 상기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 명시하여 공고 및 통보 하여야한다.
- 3항) 본부는 모든대의원 및 이사에게 SNS, Fax, Email,우편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30 일전까지 통보한다.
- 4항) 긴급을요하는 임시총회시 개최 1 주일전까지 공고 하여야한다.

33 조. 총회특례

- 1항) 소집권자 이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때 대의원에의해 소집된다.
 - 가) 본부 집행부가 문서로 집단사퇴를 명시하였을때
 - 나) 본 정관 28 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에 의거한 총회소집을 소집권자가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일내에 소집을 기피할때
 - 다)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으로 총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때
- 2항) 총회의 특례사항에서 소집된 총회는 출석대의원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 진행을한다.

제 6 장 회기 및 감사

34 조. 회기

- 1항) 본회 회기는 매년 4 월 1 일부터 후년 3 월말로 하되 회장선거가있는 해는 대의원 총회당일까지로 한다.
- 2항) 본회의 회기결산보고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35 조. 감사의 원칙

본회의 재정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눠진다.

1항) 정기감사

가. 정기감사는 매년 3 월 정기이사회대의원총회 전에 실시한다.

2항) 특별감사

가.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나. 감사가 회계업무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다. 본회의 재적이사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다.

라. 본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3항)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감사는 감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감사에 결함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소집 또는 대의원총회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

제 7 장 사무처

36 조. 사무처

1항)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처장, 실장, 차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포함) 및 장애인체육회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37 조. 직제 및 규정

1항)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의 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2항)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사업주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8 조. 행정서류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1항) 본회는 다음과같은 서류를 보관,관리 한다.
- 가. 본회정관 및 제반규정
 - 나. 본회 본부조직 명부
 - 다. 중앙경기단체나 지역체육회 명부
 - 라. 재정출납 장부
 - 마. 은행구좌 및 은행출납 장부
 - 바. 동산,부동산 및 자재목록
 - 사. 각종 회의록
 - 아. 사업실적 기록부
 - 자. 공문서발송처 및 접수처
- 2항) 사무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것은 예외로하고 본회의 이사가 요구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39 조. 자산의 구분

- 1항)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나.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 다. 회비
 - 라. 공공단체 보조금
 - 마. 기부금 및 찬조금
 - 바. 사업의 수익금

40 조. 예산편성 및 결산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1항)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야한다.
- 2항) 매 회계연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야한다.

41 조. 기금 및 적립금

대의원총회 승인을얻어 특별한 목적을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수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42 조. 자산의 관리

- 1항) 본회의 자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산은 기본자산으로한다.
 - 가. 부동산
 - 나. 기금
 - 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자산.
- 2항) 본회의 자산을 다음과같이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 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때
 - 나.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때
 - 다. 차입금도 해당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것을 제외하고는 이와같다.

43 조. 자금조성

- 1항) 임원 및 이사회비는 총회에서 재조정, 결정한다.
- 2항) 각 단체의 가맹비,회비는 아래와같다.
 - 1) 임원(부회장)회비는 \$1000 로하고 각 단체 연회비는 \$500 로 하며 당해연도 5 월 30 일까지완납해야한다.
- 3항) 본회 개최 및 주최,주관하는 대회
 - 가.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선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 주이내에 결산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나. 단, 미주장애인체전,전국장애인체전의경우 행사종료후 90 일이내로 결산 순이익금은 특별 회계법에의해 분배하도록한다.
- 4항) 찬조금 및 기부금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모든 찬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5항) 본회 사업 수입금

- 가. 본회는 제 1 장 1 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수익 사업을한다.
- 나. 본회가 주최, 주관한 사업은 사업종료 30 일이내로 결산후 본회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다. 모든사업은 사업의결과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해야한다.

44 조. 자금운영

- 1항) 자금운영은 모든것을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한다.
- 2항) 본부는 모든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이사 전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 3항) 모든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사무처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2 명이상이 관리 하도록한다.
- 4항) 모든 지출은 “재 미국대한장애인체육회” 명의로 지출되어야한다.
- 5항) 긴급을 요할시 회장직권으로 1,500 불이내로 지출승인 할수있다. 단, 21 일이내로 모든이사에게 상기사항을 통보해야하며 그사용 내용을 밝혀야한다. 만약에 긴급을 요하지만 금액이 1,500 불 이상일경우는 서면결의 **이사회**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9 장 정관개정

45 조. 정관개정 및 수정

- 1항) 정관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할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얻어 회장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을 심의한다.
- 2항) 정관의 개정 및 수정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후 소집된 정기대의원총회 에서만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6 조. 세칙운영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 1항) 상벌 및 포상 그리고 선거에대한 규정은 별도세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 2항) 선거에대한 세칙은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정하여 이사회에서 검토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통과한후 시행된다.
- 3항) 소청,상벌 및 포상에대한 세칙또한 소청상벌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이사회의 승인후 발현된다.

10 장 부칙

47 조. 중재 및 조정

- 1항) 본회는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항) 중재 및 조정 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48 조. 제적인수

본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자격정지된 자는 재적인 수에서 제외된다.

49 조. 규정 및 세칙

- 1항) 본회는 본정관의 준하여 선거운영세칙, 가맹단체규정, 지역체육회규정, 상벌세칙, 포상규정세칙, 체전규정 등을 두어 시행한다.
- 2항)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항) 본회의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시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회 회칙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4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통상관례에 준 하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 5항) 본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50 조. 기록

- 1항)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 가. 해당연도 본부조직 명부
 - 나. 중앙경기단체 및 지역체육회조직 명부
 - 다. 사업성과
 - 1)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대회 계획과 결과
 - 2) 본회가 행사 및 대회 참가 계획과 결과
- 2항) 상기서류는 수정없이 영구로 한다.

51 조. 임기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초대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52 조. 회칙 발회

본 정관 및 그 부속회칙과 문서양식은 이사회에서 검토후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가진다.

(2019년 11월 23일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음)